|  |  |  |
| --- | --- | --- |
| **일반납세자 이전 관련 증치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71호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계속 경영할 때 그 일반납세자 자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아직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가 주소, 영업장소의 변동으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수속을 밟은 후 세무등기기관에서 세무등기를 말소하고 전입지에서 세무등기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세무등기 수속을 하면 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보류할 수 있으며,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아직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계속 공제할 수 있다.  2.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아직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열심히 점검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는 1식 3부로서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에서 1부 보관하고 1부는 납세자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1부는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에 송부한다.  3.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은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송부한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 대조하고 전출 전의 미 공제 매입세액을 확인한 후 납세자가 계속 공제신고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은 더 이상 조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생략)  국자세무총국  2011년 12월 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一般纳税人**  **迁移有关增值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71号  现就增值税一般纳税人经营地点迁移后仍继续经营，其一般纳税人资格是否可以继续保留以及尚未抵扣进项税额是否允许继续抵扣问题公告如下：  一、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因住所、经营地点变动，按照相关规定，在工商行政管理部门作变更登记处理，但因涉及改变税务登记机关，需要办理注销税务登记并重新办理税务登记的，在迁达地重新办理税务登记后，其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予以保留，办理注销税务登记前尚未抵扣的进项税额允许继续抵扣。  二、迁出地主管税务机关应认真核实纳税人在办理注销税务登记前尚未抵扣的进项税额，填写《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见附件）。  《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一式三份，迁出地主管税务机关留存一份，交纳税人一份，传递迁达地主管税务机关一份。  三、迁达地主管税务机关应将迁出地主管税务机关传递来的《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与纳税人报送资料进行认真核对，对其迁移前尚未抵扣的进项税额，在确认无误后，允许纳税人继续申报抵扣。  本公告自2012年1月1日起执行。此前已经发生的事项，不再调整。  特此公告。  附件：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略）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十二月九日 |